

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99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2. 18.

김석한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: 2025. 2. 25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5. 3. 17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원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지원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호
 - 예고기간: 2025. 2. 18.(화) ~ 2025. 2. 24.(월)[6일간]
 - 예고결과: 의견 1건(환경과)

조례안 내용	원안 수용
고성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	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수용함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안전 보호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관련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규정함.

- (안 제3조) 군수의 책무

-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.

- (안 제4조)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

-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.

- (안 제5조 ~ 제6조) 지원사업, 지원대상 및 선정

-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, 안 제6조에서는 고성군에 실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